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17 + 418)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 ·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911.91	--서화 · 디자인 ·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50			제 50 류 견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2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5002.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6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6.00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 호 및 제 50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견 노일(noil)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90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			제 51 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20	-동물의 거친 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3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3.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4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4.00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5112.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3		직물(등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113.00	-직물(등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등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			제 52 류 면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202.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1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		그 밖의 면직물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2.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 · 대마 ·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5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5.00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	-코이어(coir)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		아마직물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54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1.20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텍스처드사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53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63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	
		5403.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5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00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2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1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옴(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aramid)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20	-재생 · 반(半)합성 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 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6.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51	--주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	
		5509.9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9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Phần	Nhóm	Phân nhóm (HS 2017)	Mô tả hàng hóa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về xuất xứ
		5509.99	--Loại khác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0		Sợi (trừ chỉ khâu) từ xơ staple tổng hợp hoặc tái tạo, đã đóng gói để bán lẻ	
			-Có chứa từ 85% trở lên tính theo khối lượng là xơ staple tổng hợp hoặc tái tạo	
		5510.11	--Sợi đơn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0.12	--Sợi xe (folded) hoặc sợi cáp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0.20	-Sợi khác, được pha chủ yếu hoặc pha duy nhất với lông động vật loại mịn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0.30	-Sợi khác, được pha chủ yếu hoặc pha duy nhất với bông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0.90	-Sợi khác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55.11		Sợi (trừ chỉ khâu) từ xơ staple nhân tạo, đã đóng gói để bán lẻ	
		5511.10	-Có chứa từ 85% trở lên tính theo khối lượng là xơ staple tổng hợp	Thay đổi từ bất kỳ nhóm nào khác hoặc 4 chữ số không áp dụng quy tắc này nếu hàng hóa sử dụng không quá 40% trị giá FOB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8 호부터제 5510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30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8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9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30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		펠트(felt)(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펠트(felt)(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2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		부직포(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 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 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 ·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9		실 ·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9.00	-실 ·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2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4.2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 초과 1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 · 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7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7	--경(經)파일(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2.11	--표백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3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5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805.00	-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806.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6.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 · 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수천	
		5810.9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			제 59 류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0.00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 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편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001.9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20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40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것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5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6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37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8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9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1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61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4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리프(brief)와 팬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		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트랙슈트	
		6112.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3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5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6.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1.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2.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3.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4.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4.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62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Xem tiếp Công báo số 421 + 422)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